

2018년 서울어워드 참가상품 모집

※ 신청방법(매뉴얼) 바로가기

<https://smc.sba.kr/Pages/Information/NoticeDetail.aspx?p=0&id=51efcf5-f720-e811-80d0-9418827691e3>

※ 샘플제출안내

- 신청한 상품에 대한 샘플제출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샘플 제출 정보 | (0756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SBA 서울유통센터 B동 103호 ※ 서울어워드 운영사 (☎ 02-2657-5873) | 택배발송 "필수" |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11월 7일(수) "2018년 마지막 모집!"
- 모집대상: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제조상품 중 어워드 인증을 통해 판로개척 및 확대를 희망하는 상품 (기업별 신청상품 수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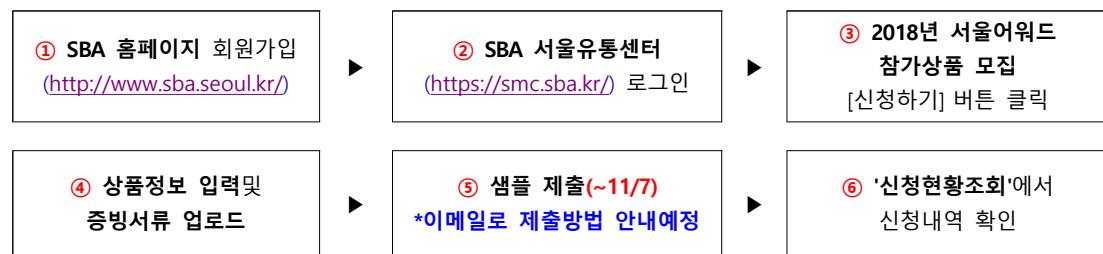
| | |
|----------|--|
| 필수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제조·생산한 B2C상품 (지역 제한 없음)SBA 유통카테고리(별첨 참고)에 해당하는 상품 / OEM, ODM 가능 |
| 제외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청서 제출 당시 이미 폐업신고 되었거나 3개월 이내 폐업이 예정된 기업이 제조한 상품판매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수리, 교환, 환불, 배상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품서울어워드 인증을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마케팅에 악용할 소지가 있거나 식품·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중 효능·효과를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품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등을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상품 및 홍보물에 표기한 상품기타 브랜드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SBA 유통브랜드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품 |

※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행절차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연 번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⑤ | 샘플 제출 정보 | <p>(0756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SBA 서울유통센터 B동 103호 ※ 서울어워드 운영사 (☎ 02-2657-587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p> <p>※ 신청하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브랜드가 아닌 상품별로 신청서 제출 (예) 2개 상품 신청 → 신청서는 상품별로 작성하여 총2개의 신청서 등록</p> <p>※ 샘플 및 필수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 이력조회가 가능한 "택배"발송이 필수, 추적이 불가능한 우편발송의 경우 분실시 책임지지 않음.</p> <p>※ 기존에 선정된 제품은 선정심사에서 제외됨. 단, 원재료 변경 또는 성능 향상 등의 개선 제품은 참가 가능</p> | 택배발송 "필수" |

3.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기업별, 상품별 상이할 수 있음

-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상품 인증서 및 엠블럼, 인증마크 등 제공
- 국·영·중문 총 3종 홍보 콘텐츠(e-카달로그, 웹툰, 홍보영상) 제작 지원 기회 제공
- 어워드 전용 온라인채널 '나만 알고싶은 꿀템'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웨이보, 인스타그램) 홍보
- 종합 홍보지원(언론보도, SNS 바이럴, 방송사 프로그램 연계, 홈쇼핑 등)
- SBA 서울유통센터, SETEC 내 상품전시 등
- 선정 상품 소개 자료 번역(영문/중문) 및 바이어에 제공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장터 참가 기회 제공
- SBA 유통교류회 및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 SBA 서울유통센터 시설 대관 지원

✓ 지원내용 상세보기 URL : <https://smc.sba.kr/Pages/BusinessInfo/HiSeoulAward.aspx?p=0>

4. 선정기준 및 분야

○ 선정방법

- 평가방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총합이 80점 이상인 상품

※ 신제품, 유통채널 미확보 제품 등 현재까지의 매출액이 저조한 상품은 별도기준으로 우수상품을 선정하므로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 기본평가(정량 70 + 정성 30) | 특별평가(정량 30 + 정성 70) |
|------|--|--|
| 평가대상 | - 매출액 상위 상품 | - 매출액 하위 상품 |
| 정량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① 매출실적(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매출(50점) • 해외매출(10점) ② 대외성과(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수상(4점) • 외부인증(4점) • 투자유치(2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① 매출실적(20점)(※ 국내외 합산) ② 대외성과(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수상(3점) • 외부인증(4점) • 투자유치(3점) |
| 정성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 타겟고객 설정 및 시장분석(5점) • 상품경쟁력(15점) • 마케팅 및 유통채널 보유현황.노력(1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 제품 경쟁력(35점) • 타겟고객 설정 및 시장분석(15점) • 가격설정의 적정성(10점) • 마케팅 현황(5점) • 유통채널 입점현황(5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의해 심사위원, 심사과정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 식품분과 선정기준

- 필수요건 : 출시 3개월 경과된 상품
- 우대요건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기농식품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KS), 지리적표시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등 취득
 - 제조공정상의 위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키워드(유기, 친환경 등) 사용 상품은 해당 인증 제출
 - 효능·효과 광고 상품은 해당 효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증 자료 제출
 - 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마크,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마크 획득 제품

○ 선정분야

| | |
|---------|---|
| HT 브랜드 | 높은 상품 경쟁력과 뛰어난 상품가치가 인정되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품 (국내 및 해외 매출실적 모두 큰 상품) |
| 혁신 브랜드 | 상품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인정되어 HT 브랜드 상품으로의 성장 가능성 있는 상품 |
| 아이디어 상품 | 뛰어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수한 상품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상품 |

※ 평가결과 적격한 상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선정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정위원 대상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어워드에 선정되었더라도 향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워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①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선정된 경우
 - ② 상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야기한 경우
 - ③ 기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경우 등
- 신청서에 등록한 대외성과(외부수상, 인증, 투자유치)내역은 가점대상이 아닐 경우
추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

6. 문의

- 서울어워드 운영사(☎ 02-2657-5873)
- SBA 유통센터운영팀(☎ 02-2657-5709, 5710, 5711)

[유통카테고리] URL 클릭

<https://smc.sba.kr/Pages/Information/LibraryDetail.aspx?p=1&id=e61d04e3-3220-e811-80cf-9418827691e3>